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지침

제 정 : 2021년 3월 05일

개 정 : 2021년 7월 12일

개 정 : 2022년 4월 07일

개 정 : 2023년 2월 0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학생(이하 '수강학생'이라 함)의 사회복지 현장실습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제3조(현장실습 교과목) 본 학과에서는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1>와 <사회복지현장실습2>를 개설한다. 두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사회복지현장실습1>는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4학년 1학기에 개설한다.
- ② <사회복지현장실습2>는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4학년 2학기에 개설한다.
- ③ 방학 동안 실습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실습지도교수와 상의해서 학기 중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사회복지현장실습2>는 전공선택 교과목이지만 본 교과목 이수를 졸업시험의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팬더믹 등)의 사유는 예외로 한다.
- ⑤ <사회복지현장실습1>과 <사회복지현장실습2>의 개설 직전 동계, 하계방학에 기관 현장실습을 마쳐야 한다. 단, 다음의 각 호의 학생은 예외로 한다.
 1. 실습 후 질병에 의한 휴학 후 복학하여 교과목 수강한 학생
 2. 실습 후 군입대에 의한 휴학 후 복학하여 교과목 수강한 학생
 3. 실습 후 지도교수와 상의한 개인사정에 의한 휴학 후 복학하여 교과목 수강한 학생

제4조(현장실습 담당교수의 결정 및 임무) 현장실습 교과목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담당한다.

- ① 현장실습과 교과목 강의는 학과 교수진이 사회복지 실천분야별로 지도하고, 총괄 책임교수를 둔다. 이는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 ②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현장실습 지도교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담당 실습학생의 실습기관 선정과 배정
 2. 담당 실습학생에 대한 지도

- 3. 담당 실습학생 현장실습 기관의 방문지도
 - 4. 담당 실습학생의 실습보고회 지도
 - 5. 현장실습 문제점의 검토, 분석 및 개선책의 강구
- ④ 현장실습 총괄책임교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현장실습과 실습교과목의 전반적인 관리
 - 2. 실습학생 전체 대상 오리엔테이션
 - 3. 실습보고회 계획과 운영
 - 4. 현장실습 문제점의 검토, 분석 및 개선책의 강구

5. 실습세미나 진행 <개정 2023.2.07.>

⑤ **학과조교는 실습 담당교수와** 실습기관 및 실습학생에 대한 연락, 실습상황 검토, 실습보고서와 평가서 정리 등의 업무를 행정지원 한다. <개정 2023.2.07.>

제5조(현장실습교과목 이수 학점) 현장실습교과목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사회복지학과 전공학생은 <사회복지현장실습1>과 <사회복지현장실습2> 각각 3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장애학생과 복수전공 학생이 <사회복지현장실습2> 면제를 요청할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허가한다.

제6조(성적평가 및 처리) 현장실습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처리한다.

- ① 현장실습의 평가방법 등은 우리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 ② 현장실습 교과목의 성적은 기관 현장실습 평가점수, 현장실습 발표, 출결 점수 등을 반영한다.

제3장 사회복지 현장실습 운영

제7조(현장실습 사전교과목) ① 현장실습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전에 다음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07.>

구분	실습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교과목
2020학번까지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2021학번부터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례관리론

② **대학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목 개설 변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교과목 이수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교수회의를 통해 현장실습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02.07.>

제8조(현장실습 기관 선정 기준) 현장실습 기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한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 ②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별

표1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고 있는 기관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③ **2회 실습 중 1회는 <사회복지현장실습2> 교과목의 현장실습의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르지 않고 현장실습 지도교수와 상담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07.>**

제9조(현장실습 기관 배정 절차) 실습기관 배정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 ① 현장실습 총괄책임교수에 의한 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 ② 실습 희망기관 선정 후 현장실습 지도교수와 면담
- ③ 현장실습 기관 결정
- ④ 현장실습신청서 조교에게 제출
- ⑤ 조교는 해당 기관으로 실습의뢰
- ⑥ 현장실습 확정

제10조(현장실습의 기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경우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현장실습 지도교수와 상담하여 현장실습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현장실습은 방학 중 실습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1>의 경우 실습기관에서 160시간 이상(20학번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2> 경우 1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실습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실습시간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 <개정 2023.2.07.>

제11조(현장실습 학생 제출서류) 현장실습 학생은 서약서, 실습신청서, 현장실습 확인서 및 평가서, 현장실습일지를 사회복지 현장실습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실습의 무효) 현장실습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현장실습은 무효가 된다.

- ① 기관의 실습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
- ② 실습기간의 1/4이상 결근하였을 경우
- ③ 실습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이탈한 경우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을 거부한 경우

제13조(현장실습 학생의 안전) 안전을 위해 현장실습 학생은 다음의 각 호를 지켜야한다.

-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다.
- ② 현장실습 학생이 실습기관에서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는 즉시 현장실습 지도교수에게 연락한다.

부 칙(2021. 3. 02.) 이 지침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7. 13.)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07.) 이 지침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07.) 이 지침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